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39호, 해양수산부령 제129호('99. 8. 9)-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99. 1. 21) 및 시행령('99. 6. 3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99년 8월 9일 공포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원산지 표시업무 처리요령」은 폐지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 표시관련 고시」가 새로 만들어져 고시될 예정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중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업계관련 조항과 1999년 10월 11일자로 개정·고시된 「수산물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령」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99. 1. 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99. 6. 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99. 8. 9)
제 15조(원산지의 표시)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제2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호의 가공품원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당해 원료중 배합비율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99. 1. 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99. 6. 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99. 8. 9)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수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p> <p>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등)</p> <p>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하고, 국산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 다만,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수산물의 경우에는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3. 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p>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산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수산물등의 원산지표시의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p> <p>2.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할 것. 다만, 여러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한다.</p> <p>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 다만,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지의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3.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감범위가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99. 1. 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99. 6. 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99. 8. 9)
<p>제1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p> <p>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2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p> <p>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의 농수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2.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수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3.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p>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⑤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⑥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농수산물품질관리법 (99. 1. 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99. 6. 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99. 8. 9)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p> <p>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p> <p>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이외의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제27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등)</p> <p>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유전자변형농산물등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이라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포함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포함”이라고 표시.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이 기존의 농산물등과 다른 특성 또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특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2.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이라 표시하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이라고 표시.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이 기존의 수산물과 다른 특성 또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특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p>	

농수산물품질관리법 (99. 1. 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99. 6. 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99. 8. 9)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원산지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포장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p>